

영등포구의회  
2004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

2004. 12. 15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專 門 委 員 )

#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규모(총괄) ————— 총 242,883,775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당초예산	추경예산 (1차)	추경예산 (2차)	감축처리
합 계	242,883,775	203,595,699	11,843,750	11,017,591	16,426,735
일반회계	201,880,713	169,900,000	8,573,427	10,220,771	13,186,515
특별회계	41,003,062	33,695,699	3,270,323	796,820	3,240,220
의료보호	62,060	53,943	0	8,117	0
주민소득	1,209,210	863,730	0	345,480	0
주차장	39,731,792	32,778,026	3,270,323	443,223	3,240,220

○ 주요내용(명시이월) ————— 총 7건 6,759,000천원

- 행정위원회 소관 : 300,000천원
  - 폐교부지 매입비 ————— 300,000천원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 6,459,000천원
  - 당산동 공장이적지 공원조성 ————— 2,400,000천원
  - 신길동 뉴타운 계획 용역비 ————— 189,000천원
  - 영등포벤처센터 건물 매입비 ————— 2,000,000천원
  - 신길동 226~277간 도로개설공사 ————— 638,000천원
  - 구청사 주변 환경개선사업비(수정예산) ——— 800,000천원
  - 대림동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수정예산) — 432,000천원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주관부서	추경사유	예산금액	연 수
폐교부지매입비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300,000	본예산서 210
당산동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2,400,000	2004. 10.29 간주처리
신길동 뉴타운계획 용역비	도시관리과	명시이월	189,000	본예산서 438
영등포벤처센터 건물매입비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2,000,000	제2회 추경 145, 본예산서 464
신길동 226-277 도로개설공사	토 목 과	명시이월	638,000	본예산서 487
구청사 주변 환경 개선사업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800,000	수정예산
대림동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432,000	수정예산

이며 총 7건 67억 5,900만원입니다.

## □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쪽에 나와 있는 사유와 같이 예산의 년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세출예산의 명시이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검토 의견

- 폐교부지 매입사업비외 4건의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된 사항이 없었으며
- 사업의 추진이 충남보령교육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청 등의 결정변경 또는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12월 14일

- 구청사 주변환경 개선 사업비 8억원
- 대림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4억3천 2백만원이 포함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사일정상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못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사유는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인 구 청사 주변 환경개선사업비와 영세상인의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림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목적의 서울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년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수정된 명시이월 예산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우리 구의 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 12. 15

보 고 자 : 김 찬 재